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제15조의3제1항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7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요건을 일원화하는 한편,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미화 5천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108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으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3010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채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채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채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채납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